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1
----------	-----

제출년월일 : 2009. 11.

제출자 :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교육경비 보조기준에 있어 보조기준율을 상향 조정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한 관내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며
- 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내부 국장급 공무원 및 구 의회 의원의 위원 수를 축소하고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인사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함
- 다. 어려운 한자를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를 정비하며, 행정서식을 서식 설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경비 보조기준율 상향조정(안 제4조)

○ 전년도 결산 구세의 1% 이내 → 6% 이내

- 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 중 외부 전문가 비율 확대(안 제6조)

- 다. 행정서식 설계 기준에 따른 서식정비(안 별지 서식)

○ “명칭”을 “학교명”으로 변경

○ 서식호수 및 재원표시 등 서식설계 기준에 따른 정비

- 다. 그 밖에 한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및 주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6조 ~ 제13조, 제15조)

3. 근거법규

-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 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 없음('09. 9. 23 ~ 10. 13)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중구비를”으로 한다.

제4조 중 “구세의 1퍼센트 이내”를 “구세의 6퍼센트 이내”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9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 3인”을 “공무원 1명”으로, “구의회의원 3인”을 “구의회 의원 2명”으로, “인사 2인”을 “인사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잔임 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7조 중 “위원회 회의를 통할한다”를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없는 때에는”를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편성시에”을 “편성 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목적외 사용 금지”를 “목적 외 사용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1호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승인을 얻은”을 “승인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조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제5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신청서

학 교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체부담	기타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울산광역시중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중구비를 ----- ----- ----- ----- -----.</p>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u>각호</u>와 같다.</p> <p>1. ~ 5.(생략) 6. 기타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p>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 ----- ----- ----- <u>각 호</u>. 1. ~ 5.(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p>
<p>제4조(보조기준액 등)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결산 <u>구세의 1퍼센트 이내</u>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u>범위안에서</u>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보조기준액 등) ----- ----- <u>구세의 6퍼센트 이내</u>-- ----- <u>범위 안에서</u>-- -----.</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u>1인</u>을 포함한 <u>9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u>위원중에서</u>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구 국장급 <u>공무원 3인</u>, 구 <u>의회의원 3인</u>,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인,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u>인사 2인</u>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임 기간으로</u> 하되,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p>	<p>제6조(위원회 구성) ① ----- ----- <u>1명</u> ----- <u>9명</u> ----- -----.</p> <p>② ----- ---- <u>위원 중에서</u> -----.</p> <p>③ ----- <u>공무원 1명, 구의회 의원 2명</u>, ----- ----- ----- <u>인사 4명</u>-----.</p> <p>④ ----- ----- ----- <u>남은 임기로</u> ----- ----- -----.</p>
<p>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u>위원회 회의를 통합한다</u>.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u>없는 때에는</u>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 ----- <u>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u>. ----- ----- ----- <u>없을 때에는</u> -----.</p>
<p>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u>1인</u>을 두되, 업무주관 과장이 된다</p>	<p>제8조(간사) ----- ----- <u>1명</u>----- -----.</p>
<p>제9조(기능) 위원회는 <u>다음 각 호 1의 사항</u>을 심의한다.</p> <p>1. ~ 3.(생략) 4. <u>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u></p>	<p>제9조(기능)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u>-----.</p> <p>1. ~ 3.(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회의) ①(생략) ②정기회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생략) ④위원회에 출석하는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p>	<p>제10조(회의) ①(현행과 같음) ② ----- 편성 시에 ----- -----. ③(현행과 같음) ④ ----- -----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로 ----- -----.</p>
<p>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 3.(생략)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p>	<p>제11조(회의록) ----- ----- 각 호 ----- -----. 1. ~ 3.(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p>
<p>제12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생략)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생략)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p>	<p>제12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 -----. 1. ~ 4.(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p>
<p>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 3.(생략)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을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p>	<p>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 제12조에 따라 ----- ----- ----- 각 호----- -----. 1. ~ 3.(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라 ----- ----- -----</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목적외 사용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 <u>승인을 얻은</u>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u>각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 3.(생략)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p>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 ----- 목적 외----- -----.</p> <p>----- <u>승인을 받은</u> ----- -----.</p> <p>② ----- ----- <u>각 호</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목적 외----- 2. ~ 3.(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 -----
<p>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u>각호</u>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생략)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p>② (생략)</p>	<p>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 ----- <u>각 호</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준용)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p>	<p>제17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p>

현 행		개 정 안																																							
[별지 서식]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체부담	기타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																																									
<p>「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p>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p>																																									
210mm×297mm [일반용지 60g/m ² (제활용품)]																																									
<p>[별지 서식]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신청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학교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대 표 자</th> </tr> </thead> <tbody> <tr> <td>소 재 지</td> <td></td> </tr> <tr> <td>사 업 명</td> <td></td> </tr> <tr> <td>보조사업의 목적</td> <td></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보조사업의 소요경비</td> </tr> <tr> <td>총사업비</td> <td>보조금</td> <td>자체부담</td> <td>기타</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보조사업의 기간</td> <td colspan="3"></td> </tr> <tr> <td>사업계획</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4"> <p>「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td> </tr> <tr> <td colspan="2">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인)</td> </tr> <tr> <td colspan="4"> <p>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p> </td> </tr> </tbody> </table>				학교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체부담	기타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				<p>「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p>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p>			
학교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체부담	기타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																																									
<p>「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p>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p>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31)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11. 11(수)

나. 제출자 :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 : 2009. 11. 16(월)

라. 위원회 상정 : 2009. 11. 30(월)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이의 지원 확대를 통하여 관내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내부 국장급 공무원 및 구 의회 의원의 위원수 축소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를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교육경비 보조기준율 상향조정(안 제4조)

- 전년도 결산 구세의 1% 이내 → 6% 이내

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 중 외부 전문가 비율 확대(안 제6조)

- 심의위원회 위원 : 9명⇒8명(1명 감)

- 조정 : 공무원3⇒1, 구의원3⇒2, 외부인사2⇒4

다. 행정서식 설계 기준에 따른 서식정비(안 별지 서식)

- “명칭”을 “학교명”으로 변경
- 서식호수 및 재원표시 등 서식설계 기준에 따른 정비

라. 그 밖에 한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및 주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6조 ~ 제13조, 제15조)

5. 관련법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6.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홍성춘)

가. 본 개정 조례안은

-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이의 지원 확대를 통하여 관내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내부 국장급 공무원 축소 등의 위원 수의 조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를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이 전년 결산 구세의 1%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6%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을 3명에서 1명으로, 구의회 의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외부인사를 2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였음.

다. 이와같이 개정하려고 하는 주내용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으로

- 시관내 타구·군에 비해 보조 기준률이 적어 상향조정하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異見)이 없음.
- 다만, 교육경비 보조 기준률 6% 상향조정에 따른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